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94
----------	-----------

2016년 4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수정이유

-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 정정 등 보완사항을 반영함

2. 수정주요내용

-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공공공간, 공적공간, 사회기반시설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7조)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이념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를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이념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를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시장의 역할)”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다른 조례 및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으로,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가와 장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되, 안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전년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연도 목표”를 “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체적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되, 안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기본지침으로 한다.”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2항은 삭제하되,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교통시설(지하철, 버스 등), 보행환경, 공원,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 및 민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를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되,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도시디자인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안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침”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되, 안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제4호 중 “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되, 안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한다.

안 제23조의 제목“(관계기관의 협조)”를“(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관계기관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를“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로 한다.

안 제24조 중“한다.”를“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u>유니버설디자인 이념</u>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u>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유니버설디자인</u>"이란 <u>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u>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기본이념) <u>유니버설디자인</u>은 다음 각 호의 <u>기본이념</u>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p>	<p>제1조(목적) ----- <u>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p> <p>-----</p> <p>1. ----- <u>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u> -----</p> <p>-----</p> <p>-----</p> <p>2. ~ 3. (제정안과 같음)</p> <p>4. "<u>공공기관</u>"이란 <u>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이념) -----</p> <p>-----<u>기본이념</u>을 충족하여야 한다.</p>

제정안	수정안
<p>1. ~ 6. (생략)</p> <p>제4조(시장의 역할)</p> <p>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다른 조례 및 법률과의 관계)</p> <p>①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u>하여야 한다.</u></p> <p>②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그 밖의 「도로법」, 「교통약자</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시장의 책무)</p> <p>① ~ ②(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p> <p>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 ----- -----<u>하여야 하</u> <u>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삭제></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p>	<p><u>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p>

제정안	수정안
<p>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 ④ (생략)</p> <p>제8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u>전년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u>해당연도 목표에 관한 사항</u></p>	<p>-----</p> <p>----- <u>다만,</u></p> <p><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6. <u>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u></p> <p>7. -----</p> <p>-----</p> <p>-----</p> <p><삭제></p> <p>제9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u>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u>목표에 관한 사항</u></p>

제정안	수정안
<p>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u>구체적 추진계획</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u>추진계획</u>에 관한 사항</p> <p>4.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p> <p>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기본지침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 ~ 5. (생략)</p> <p>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내용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p> <p>① 시장은 <u>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제10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p> <p>① 가이드라인은 <u>교통시설(지하철, 버스 등), 보행환경, 공원,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 및 민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u></p> <p>② <u>시장, 구청장,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시의 공공시설과 공공공간 중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공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공간 이외에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u></p>	<p>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p> <p>① <u>-----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u></p> <p>③ <u>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u></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 data-bbox="683 808 799 846"><신설></p> <p data-bbox="245 1547 799 164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p> <ol data-bbox="284 1688 799 1928"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284 1688 544 1727">1. ~ 2. (생략) <li data-bbox="284 1771 799 1928">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u>지침</u> 등의 개정 에 관한 사항 <p data-bbox="683 1980 799 2018"><신설></p>	<p data-bbox="863 277 1401 779"><u>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u></p> <p data-bbox="863 808 1401 981">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p> <ol data-bbox="879 1010 1401 1518"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79 1010 1401 1249">1. 도시디자인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3호 <li data-bbox="879 1279 1401 1518">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p data-bbox="863 1547 1203 1585">④ (제정안과 같음)</p> <ol data-bbox="879 1688 1401 1921"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79 1688 1315 1727">1. ~ 2. (제정안과 같음) <li data-bbox="879 1771 1401 1921">3. ----- ----- <u>규칙</u> ----- ----- <p data-bbox="879 1980 1401 2018"><u>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u></p>

제정안	수정안
<p>4. ~ 10. (생략)</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략)</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략)</p> <p>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 ④ (생략)</p> <p>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략)</p> <p>제17조(위원의 해촉) (생략) 1. ~ 5. (생략)</p> <p>제18조(수당) (생략)</p> <p>제19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u>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u></p>	<p><u>운영하는 대상</u> 5. ~ 11. (제정안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8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p> <p>제19조(수당) (제정안과 같음)</p> <p>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u></p>

제정안	수정안
<p>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p> <p>5. ~ 12. (생략)</p> <p>③ ~ ④ (생략)</p>	<p><u>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p> <p>-----</p> <p>-----</p> <p>-----</p> <p>5. ~ 12. (제정안과 같음)</p> <p>③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20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신규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21조(시민참여) (생략)</p>	<p>제22조(시민참여) (제정안과 같음)</p>
<p>제22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p> <p>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제23조(관계기관의 협조)</p> <p>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관계기관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u>한다.</u></p> <p>제26조(시행규칙) (생략)</p>	<p>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p> <p>----- ----- <u>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u> ----- -----</p> <p>제24조(교육 및 홍보) ----- ----- ----- ----- ----- <u>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삭제></p>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별표에 따른 심의대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을 제거(높낮이차

가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3. 장애인화장실의 최소면적은 $4m^2$ 이상으로 한다.
4. 보도의 횡경사는 1/24이하로 한다.
5. 보도의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① 가이드라인은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예의 적극 참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도시디자인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